‘26. 10.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 로 장 애 인 과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26-98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추진배경

○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의 위탁기간 만료('26. 12. 31.) 도래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과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의 활기찬 노후가 실현되도록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바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7조

나. 위탁사무명 : 노인복지타운(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다. 위탁사무 내용

○ 노인 복지증진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돌봄 및 복지 네트워크 구축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 요양원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 및 인지활동 서비스 제공

○ 그밖에 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노인종합복지관(부대시설 등), 노인전문요양원
소 재 지	김제시 하동1길 79
시설규모	대지 64,238㎡, 건축면적 6,615.45㎡(5동)
직원구성	· 노인종합복지관 : 15명(관장 포함) · 노인전문요양원 : 42명(원장 포함)

마.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총1,182,886천원 (※ 2026년 본예산 기준)

- 노인종합복지관 : 인건비 677,758천원 / 운영비 205,128천원
- 노인전문요양원 : 인건비 300,000천원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신청자격 : 법인 정관상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심사·선정

3. 그간 위탁 현황

위탁기간	수탁기관명	선정방법	비고
'08. 07. ~ '11. 10. (3년 3월)	한기장복지재단	공개모집	중도포기
'11. 11. ~ '12. 12. (1년 1월)	예림의료재단	공개모집	재수탁포기
'13. 01. ~ '26. 12. (14년)	대한성공회	공개모집	

4. 금후계획

○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 '26. 11.

○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26. 11.

○ 위탁기관 선정 ---------- '26. 12.

○ 결격사유 조회 및 선정결과 공고 ---------- '26. 12.

○ 위·수탁 협약 체결(공증절차 이행) ---------- '26. 12.

5. 따로붙임

○ 민간위탁 동의(안)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관련법령 발췌서

○ 방침결정문

붙임1 **민간위탁 동의(안)**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김제시는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 김제시의회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민간위탁 실시

▸ 사유 : 노인복지타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포괄적이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민간위탁 대상

시 설 명	노인종합복지관(부대시설 등), 노인전문요양원
직원현황	· 노인종합복지관 : 15명(관장 포함) · 노인전문요양원 : 42명(원장 포함)
시설장소	김제시 하동1길 79
시설규모	대지 64,238㎡, 건축면적 6,615.45㎡(5동)
시설유형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위탁사무	노인복지타운 운영
이용인원 ('26년 기준)	·노인종합복지관 : 일 550명 ·노인전문요양원 : 요양원 51명(정원 61명), 주간센터 9명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7조

○ 위탁기간 : 5년 (2027. 1. 1. ~ 2031. 12. 31.)

○ 수탁자격

- 법인의 목적사업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기술, 능력, 재정 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 수탁기관 선정방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선정

붙임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 영(지자체 직접 수행)

-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직접 채용 시 종사자 인건비 지속적 상승 예상
- 공공성과 서비스 통제력은 높지만, 행정조직의 비대화, 시설노후로 인한 지속적인 지출이 예상되어 재정부담 증가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성

-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탁할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전문 인력을 활용한 투명 경영

○ 안정성

- 다년간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해 온 법인이 운영할 경우 풍부한 경영 경험과 재정능력으로 안정적인 운영 가능

□ 경제적 효율성

○ 비용 절감 및 예산 운영의 유연성

-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여 고정비(연금, 복리후생비 등) 부담 감소
- 이미 해당 분야의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 수탁업체를 활용하면, 지자체가 새로 시설을 구축하거나 장비 구입 비용 절감

□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민간의 전문성

-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토대로 민간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감동서비스로 활기찬 노후가 실현되도록 서비스 제공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량 지표(시설 이용률)와 정성 지표(지역사회 기여도)의 설계를 통해 성과 측정 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영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7조(승인 및 동의)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미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4. 그 밖의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위탁사무별 업무소관 부서의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의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타운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하 "수탁자"라 한다.)
② 복지타운 시설의 위탁기준 및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복지타운의 운영경비는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체결해야 하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탁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한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붙임4 **방침결정문**

지평선생명도시 김제

등록번호	경로장애인과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6. 9. 10.

주무관	노인시설팀장	경로장애인과장	복지환경국장	부시장	시장
김현진	김미선	박순라	이명호	이해서	
협조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추진 계획

경로장애인과

김제시 [노인시설팀]